

제3148호  
2024. 11. 27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 
편집인 : 홍보담당관 유진영  
전화 : 3396-4955  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자치법규

[행정예고]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1258호

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 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선	기관 의 장
람	

# 구 보

- 자치법규  
[행정예고]  
제2024-1258호 :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 예고 ..... 2
- 고 시  
제2024-71호 : 도시관리계획(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..... 6
- 공 고  
제2024-1244호 :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-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·공고 ..... 10  
제2024-1245호 :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..... 16  
제2024-1246호 :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를 위한 공람·공고 ..... 17

1. 건 명 : 「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」일부개정훈령안
2. 목 적 :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통한 출산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
3. 내 용 :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을 인상(안 제5조 제8항)
4. 관련근거 :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5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16.[20일간]
6. 공고방법 :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(http://www.junggu.seoul.kr)
7. 의견제출 : 서울특별시 중구청 행정지원과로 문의(붙임 의견제출서 작성)  
가. 보내실 곳 (우)07658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행정지원과  
나. 문 의 처  
- 전 화 : 02-3396-4509  
- 팩 스 : 02-3396-8601  
- 이메일 : tndwns93@junggu.seoul.kr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 
3. 의견제출서 양식 1부. 끝.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 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###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⑧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

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주차요금) ① ~ ⑦ (생 략) ⑧ 「다둥이 행복카드」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,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 ⑨ · ⑩ (생 략)	제5조(주차요금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 ⑨ · ⑩ (현행과 같음)
제7조(주차요금 징수방법) ① (생 략)	제7조(주차요금 징수방법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13조(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) ① (생 략)	제13조(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				
예 규 명	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			
의견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 화 번 호	
	주 소			
예규(안) 항목	검토의견 [의견제출 내용]			
<div style="margin-top: 10px;">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10px; font-size: 1.1em;">2024년    월    일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10px; 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span>제출자</span> <span>(서명 또는 인)</span> </div>				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

고 시

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71호

도시관리계획(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8호(2019.1.17.)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중구고시 제2022-31호(2022.4.20.), 중구고시 제2023-21호(2023.3.15.)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81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19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측량 성과에 따라 남산동3가 29-3번지 82.8㎡에서 남산동3가 29-5번지 76.2㎡로 지번 정정, 면적감소

II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	중구 회현동, 명동 일대 남창동, 남대문로5가, 회현동1·2가, 회현동3가, 남산동1가·2가·3가, 충무로2가, 예장동	412,142.8	-	412,142.8	서울시고시 제2019-28호 (2019.01.17)	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

1) 최대개발규모 : 변경없음

- 2) 획지 : 변경없음
- 3) 공동개발
  -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(변경사항에 한함)

구분	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	비고	구역
				동명	지번	면적(㎡)		
기정	㉔	-	5,129.1	남산동3가	34-5대	5,046.3	리빙티비 (구.KBS) 계획관리구역	계획관리구역
				남산동3가	29-3도 (일부)	82.8		
변경	㉔	-	5,122.5	남산동3가	34-5대	5,046.3		
				남산동3가	29-5대	76.2		

- 나.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- 다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- 라.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- 마. 계획관리구역(근현대건축물)에 관한 결정
  - 1) 계획관리구역(근현대건축물) 결정조서
    - 계획관리구역 결정조서(변경사항에 한함)

구분	도면 표시	위치	면적(㎡)	계획내용	
기정	㉔	남산동3가 34-5대 외 1필지	5,129.1	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관리지침	· 「서울도심기본계획」(2023)에 따름 ·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(시행)계획」의 고시내용에 따름
				획지	· 계획관리구역을 단위로 하는 획지선 지정
				용도	· 불허용도2
				건폐율	· 제1종일반주거지역 · 60%이하
				건폐율 완화	· 「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에 따른 건폐율 완화 적용
				용적률	· 제1종일반주거지역 · 기준 : 150%이하 · 허용 : 150%이하 · 상한 : 미적용
				높이	· H3(해당 용도지역지구 허용 높이)
				교통처리	·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관리지침 준수 시 주차장 설치기준 100% 완화
변경	㉔	남산동3가 34-5대 외 1필지	5,122.5	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관리지침	· 「서울도심기본계획」(2023)에 따름 ·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(시행)계획」의 고시내용에 따름
				획지	· 계획관리구역을 단위로 하는 획지선 지정
				용도	· 불허용도2
				건폐율	· 제1종일반주거지역 · 60%이하
				건폐율 완화	· 「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에 따른 건폐율 완화 적용
				용적률	· 제1종일반주거지역 · 기준 : 150%이하 · 허용 : 150%이하 · 상한 : 미적용
				높이	· H3(해당 용도지역지구 허용 높이)
				교통처리	·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관리지침 준수 시 주차장 설치기준 100% 완화
특례적용	· 「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)에 따른 특례 적용				

- 4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5. 적용의 완화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6. 특례적용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7.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8.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Ⅲ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Ⅳ. 열람장소 : 구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84)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[붙임]

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

공 고
-----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1244호

###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-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 · 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.)로 정비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(1981.11.13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98호(2022.3.3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69호(2022.7.2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3-38호 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3-66호(2023.11.03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 9-1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수립하고자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 · 공고합니다.
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시정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27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# I.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
#####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증 · 감	변경	
기정	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충정로3가, 합동 28-5번지 일대	61,194.8	-	61,194.8	건설부고시 제345호('79.9.21)

2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61,821.5	-	61,821.5	100.0	
정비기반 시설	소계	12,220.1	-	12,220.1	19.8	중복결정 (사회복지시설)
	도로	7,946.4	-	7,946.4	12.8	
	공원	2,828.0	-	2,828.0	4.6	
	녹지	784.9	-	784.9	1.3	
	장기미집행 실효부지	660.8	-	660.8	1.1	
획지(대지)	소계	49,601.4	-	49,601.4	80.2	일반 정비형
	1지구	2,716.8	-	2,716.8	4.4	
	2지구	5,062.5	-	5,062.5	8.2	
	3지구	1,933.4	-	1,933.4	3.1	
	4지구	3,725.7	-	3,725.7	6.0	
	5지구	2,365.2	-	2,365.2	3.8	
	6-1지구	2,427.9	-	2,427.9	3.9	
	6-2지구	3,115.8	-	3,115.8	5.0	
	7지구	2,676.4	-	2,676.4	4.3	
	8지구	3,891.4	-	3,891.4	6.3	
	9-1지구	1,591.6	-	1,591.6	2.6	
	9-2지구	4,232.5	-	4,232.5	6.9	
	10-11지구	9,374.7	-	9,374.7	15.2	
	12-1지구	3,048.3	-	3,048.3	4.9	
	12-2지구	2,732.7	-	2,732.7	4.4	
보전정비형	3-1지구	706.5	-	706.5	1.2	

3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가) 도로(변경없음)

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2	4	30~45	간선 도로	일반 도로	1,340	중구 태평로2가 340-6	서대문구 충정로3가 44-1	-	-	
기정	소로	2	19	6~8	집산 도로	일반 도로	82	서대문구 충정로3가 367-2	서대문구 충정로3가 240-15	-	-	
기정	소로	3	19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32	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-61	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-2	-	-	
기정	소로	2	20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46	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-24	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-1	-	-	
기정	소로	1	21	10	집산 도로	일반 도로	345	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-8	서대문구 합동 116-1	-	-	
기정	소로	1	22	10	집산 도로	일반 도로	32	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-1	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-2	-	-	
기정	소로	1	23	10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65	중구 중림동 500-4	중구 중림동 419-5	-	-	

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1	24	12	집산 도로	일반 도로	72	중구 중림동 500-5	중구 중림동 155-4	-	-	
기정	소로	1	177	10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18	중구 중림동 156-90	중구 중림동 156-78	-	-	
기정	소로	3	-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357	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	서대문구 합동 115-3	-	-	
기정	소로	3	98	6	집산 도로	일반 도로	41	서대문구 충정로3가 353-4	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-7	-	-	

나) 공원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중림 공원	어린이 공원	중구 중림동 157-2	2,828.0	-	2,828.0	서울시고시 제412호 (81.11.13.)	

다) 녹지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충정로 제1녹지	기타녹지	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-3	510.5	-	510.5	-	
기정	미근 제2녹지	완충녹지	서대문구 미근동 320	274.4	-	274.4	서울시고시 제412호 (81.11.13.)	

라) 사회복지시설(변경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사회복지시설	-	중구 중림동 156-71번지 일대	부지면적 : - 연면적 : 2,965.0㎡	서울시고시 제2021-265호 ('21.6.10.)	공원하부에 중복결정
폐지	사회복지시설	-	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	부지면적 : - 연면적 : 1,701.51㎡	서울시고시 제2022-98호 ('22.3.3.)	

■ 사회복지시설(변경) 사유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변경내용	비 고
폐지	사회복지시설	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	시설 폐지	• 기부채납시설 50플러스센터 서울시의 변경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폐지

마) 공공임대업무시설(변경)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공공임대 업무시설	-	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	부지면적 : - 연면적 : 1,701.51㎡		

II.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9-1지구

1.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마포로5구역 제9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원	1,596.1	-	1,596.1	
시행방법	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	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		136세대	

2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명 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1,591.6	-	1,591.6	100.0%	-
획 지 (대지)	소 계	1,591.6	-	1,591.6	100.0%	-
	제9-1지구	1,591.6	-	1,591.6	100.0%	-

3.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

가) 사회복지시설(변경)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폐지	사회복지시설	-	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	부지면적 : - 연면적 : 1,701.51㎡	서울시고시 제2022-98호 ('22.3.3.)	

■ 사회복지시설(변경) 사유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변경내용	비 고
폐지	사회복지시설	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	시설 폐지	• 기부채납시설 50플러스센터 서울시의 변경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폐지

나) 공공임대업무시설(변경)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공공임대 업무시설	-	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	부지면적 : - 연면적 : 1,701.51㎡		

다)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(변경)

구 분		산정내용	비 고
도입 용도	기정	50플러스센터	• 평생교육과-1173(23.01.31.)과 관련하여 기존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종료(2022.11.29.)에 따라 공공임대업무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변경 요청
	변경	공공임대업무시설	
시설연면적		1,701.51㎡	• 전용면적 851.62㎡ / 공용면적 849.89㎡ • 2층(단일사용), 3층(공동사용)
건축비		3,644,545원/㎡	•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2022년), 부가세 제외
설치비용		6,201,229,763원	• 건축비 × 기부채납 연면적
부지가액		19,452,218원/㎡	• 2021년 개별공시지가 가중평균값 2배 적용
환산부지면적		436.87㎡	• 건축물 환산면적 + 토지지분면적
건축물 환산면적		318.79㎡	• 설치비용 ÷ 부지가액
토지지분면적		118.08㎡	• 기부채납시설 면적 ÷ 전체시설 면적 × 대지면적 = (1,701.51㎡ ÷ 22,935.14㎡) × 1,591.60㎡

라)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

<p>▶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량 : 383.97㎡(19.44%)</p> <p>① 정비기반시설 부담 : 없음</p> <p>② 지상 2~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: 변경 : 436.87㎡(기정 : 383.97㎡)</p> <p>- 토지지분 면적 118.08㎡, 건축물 환산면적 318.79㎡</p> <p>- 연면적 1,701.51㎡(전용 851.62㎡+공용849.89㎡)</p> <p>③ 획지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: 없음</p>
--

Ⅲ. 기 타

- 공람기간 : 2024.11.27. ~ 2024.12.27.(31일간)
- 공람의견 및 의견 제출 장소  
-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(☎02-3396-5775)
-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1245호

**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**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7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아 래 -

등록 번호	업체명	대표자	영업소 소재지	비고
소 음 진 동 - 4	(주) 엔 브 이 티	정 태 량	서울시 중구 동호로7길 41, 2층	'24.11.20. (등록일자)

- 공고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12. 까지
- 공고방법 :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자 공시 및 구보게재

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1246호

##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를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0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7호(2021.01.28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-103(2021.09.01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48(2022.06.1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7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 가. 공람 요지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  - 사업의 명칭 :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 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65-14번지 일대
  - 면 적 : 3,963.0㎡(정비기반시설 : 도로206.6㎡, 공원174.4㎡, 공공청사736.5㎡ 포함)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 명 : 을지로75피에프브이(주) 대표 김옥례
  -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8번길, 비동 4층 엠피스광고센터 477호 (영덕동, 이시티빌딩)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일로부터 67개월
- 5) 건축계획 : 지하8층/지상17층, 연면적 44,903.92㎡, 업무시설/근생

나. 공람 기간 : 2024.11.27. ~ 2024.12.11.(15일간)

다. 공람 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2)

라. 주요변경내용 : 구조 및 재료 변경 등

- 1) 구조안전심의에 따른 저층부 바닥 구조변경
  - 기존 : PT보(2,3층), 철골보(4층)
  - 변경 : PT보+철골보(2~4층)

### 2) 재료변경

· 업무시설 바닥 : 비닐계 O타일 → 카펫타일 등

마. 관계 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

-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